

## 2. 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577호)

제정 : 1969. 1. 16. 예규 제 21호  
 전문개정 : 1998. 7. 22. 예규 제477호  
 개정 : 1999. 12. 30. 예규 제491호  
 전문개정 : 2004. 8. 12. 예규 제509호  
 개정 : 2006. 8. 21. 예규 제529호  
 개정 : 2008. 9. 24. 예규 제554호  
 개정 : 2009. 10. 15. 예규 제576호  
 개정 : 2009. 12. 1. 예규 제577호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림용 종묘사업(산림용 종자와 묘목, 접·삽수, 배양묘 등 무성증식 개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제67조 내지 70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채종임분”이라 함은 채종원과 채종림에서 조림용 종자공급량이 부족 하다고 판단되거나 채종원 및 채종림이 지정되지 않은 수종의 종자를 잠정적으로 채취하는 임분으로서 채종림 지정요건에 미달되나 형질이 일반적으로 우량한 임분을 말한다.
- “채종림”이라 함은 채종원산 종자로 조림에 필요한 소요량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족 된 종자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지정된 우량임분을 말한다.
- “채종원”이라 함은 우량한 조림용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할 목적으로 수형목의 종자 또는 클론(clone)에 의해 조성된 1세대 채종원을 말한다.
- “수형목”이라 함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에 필요한 접·삽수 및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수형과 표현적 형질이 우량하여 지정한 수목을 말한다.
- “채수포”라 함은 우량한 접·삽수를 채취할 목적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일명 클론보존원)을 말한다.

6. “클론”(clone)이라 함은 접·삽목, 취목, 조직배양 등으로 무성번식된 단일 개체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7. “종자산지구역”이라 함은 산림용 종자가 생산된 지역으로 유전적 특성이나 생태적 조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구획된 지역을 말한다.

## 제 2 장 채종림 등 조성관리

- 제4조(채종림 등의 지정·해제)**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채종림·수형목의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부족하거나 채종림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수종에 대하여는 채종임분을 선정하여 종자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과 채종임분 선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수형목의 지정·해제 및 채종임분의 선정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삭 제 <2006.8.21>

- 제6조(채종원·채수포의 조성)** ①산림청장은 산림시책상 필요할 경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채종원 또는 채수포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 또는 채수포 조성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산림용 종자관리

- 제7조(종자결실 예찰조사)** ①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채종림과 채종임분에 대하여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종원에 대한 종자결실 예찰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종자채취)** ① 채종립·채종임분에서 생산되는 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직접 채취하고, 채종원산 종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직접 채취한다. 종자채취 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종·묘생산에 필요한 접순·꺾꽂이순은 채수포에서 채취·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채수포가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량 모수를 선정·채취 사용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채취한 산림용 종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종자산지구역목록과 별표 3의 종자산지구역도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종자산지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원산 종자의 산지번호는 수종·조성지역·조성년도에 따라 구분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종자의 검사 및 품질표시)**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종자의 검사기관과 검사대상 종자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지방산림청장이 채취한 종자
2. 산림환경연구소·산림개발연구원·산림자원연구소·산림환경연구원(이하 “산림환경연구소”라 한다) : 시·도지사가 채취한 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종자산지내역을 첨부하여 당해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종자품질기준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 정하는 임업용종자감정요령에 따라 검사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2)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합격종자에 대하여서는 당해 검사기관에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표시를 그 종자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자품질표시의 색깔은 채종원 종자는 분홍색, 채종립 종자는 녹색, 채종임분 종자는 황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도입산 및 채종원·채종립·채종임분 이외에서 채취한 종자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⑤ 불합격 종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보유한 산림용 종자를 공급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용 묘목의 대행생산자로 지정받은 자 또는 학술목적·국제교류상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 제 4 장 산림용 양묘사업·묘목검사 등

**제10조(양묘사업과 묘목생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대행생산을 지정하여 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채종원·채종림·채종임분에서 채취한 종자 또는 도입종자 중에서 품질검사 결과 합격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별지 제7호 서식(1)(2)에 의한 양묘사업 상황보고는 5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1)(2)에 의한 양묘실태조사보고는 10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양묘사업기준일람표 및 양묘사업공정일람표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④ 묘목생산자는 양묘사업 시 종자공급원 및 종자산지별로 구분하여 사업하고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묘목검사)** ①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묘목검사를 할 때에는 묘목검사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묘목검사원이 묘목을 검사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묘목검사통보서를 묘목검사 7일 전에 보내야 한다.

③ 묘목생산자가 묘목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생산된 묘목을 선별하여 산지별·수종별·묘령별로 50,000본 단위로 모집단을 만들어야 한다.

④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림용 묘목규격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별표에 없는 묘목의 규격은 식물분류체계상 유사한 종의 묘목을 준용한다.

⑤ 산림용 묘목규격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간장 : 근원경에서 정아까지의 길이

2. 균원경 : 포지에서 묘목줄기가 지표면에 닿았던 부분의 최소 직경
3. 균장 : 균원부에서 주근·측근 중 주된 뿌리부분의 말단까지의 길이

**제12조(묘목검사 방법)** ①묘목검사원은 묘목이 가식 또는 선묘된 상태에서 검사 모집단의 묘목 품질을 우선 달관적으로 조사하여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산림용묘목검사야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모집단의 총 속수검사를 실시한 후 모집단별로 500본에 해당하는 속을 무작위로 추출하고, 모집단이 50,000본 이하인 경우에는 1%에 해당하는 묘목을 추출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확인이 안된 묘목은 검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량검사는 추출한 묘목의 실제 본수를 검사하여 시료 기준본수로 나누어 실제비율로 산출한다.
2. 품질검사는 추출된 묘목의 간장·균원경·균장을 계측하고 규격 미달묘, 병충해묘, 연약한묘, 굴곡묘, 동·상해묘 및 형질불량묘의 불합격묘목을 가려낸 후 합격묘 본수와 시료 실제본수와의 비율을 실측하여 합격묘 비율이 95%이상 되어야 한다. 이때 병해묘 여부는 조직검사에 의해 판정도록 할 수 있다.
- ③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달관조사 결과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묘목이 5%를 초과한 때에는 그 모집단을 불합격 묘목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즉시 재선별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선별 통지를 받은 자가 재검사 요청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으면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⑤묘목검사원은 묘목 생산자의 재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묘목포장 등)** ①검사한 묘목을 포장할 때에는 큰묘와 작은묘로 구분하고 묘목의 건조방지재료(물수세미, 화학포장보습제 및 이끼류를 말한다)를 넣고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묘목의 건조방지제로서 물수세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곤포당 4kg 이상의 짙을 1개월 이상 물에 담근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묘목검사원은 검사결과 합격한 묘목을 완전히 포장하게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장시에 입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총 곤포수의 5%를 풀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묘목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는 품질표시는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묘목의 수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묘목은 종자산지가 검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 중에서 묘목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선별 지시 등) <삭제>**

**제 5 장 삭제 <2008. 9. 24>**

**제16조 삭제 <2008. 9. 24>**

**제17조 삭제 <2008. 9. 24>**

**제18조 삭제 <2008. 9. 24>**

**제19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69. 1. 16.)**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7. 22.)**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2. 30.)**

-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예규의 폐지) 버섯종균의품종등록요령(산림청예규 제33호, 1990.7.14.)은 이를 폐지한다.
- ③(버섯종균의 품종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전에 버섯종균의품종등록요령에 의하여 등록된 버섯종균품종은 부칙 제2항의 폐지예규에 불구하고 품종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9. 24)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15)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

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7] 산림용묘목규격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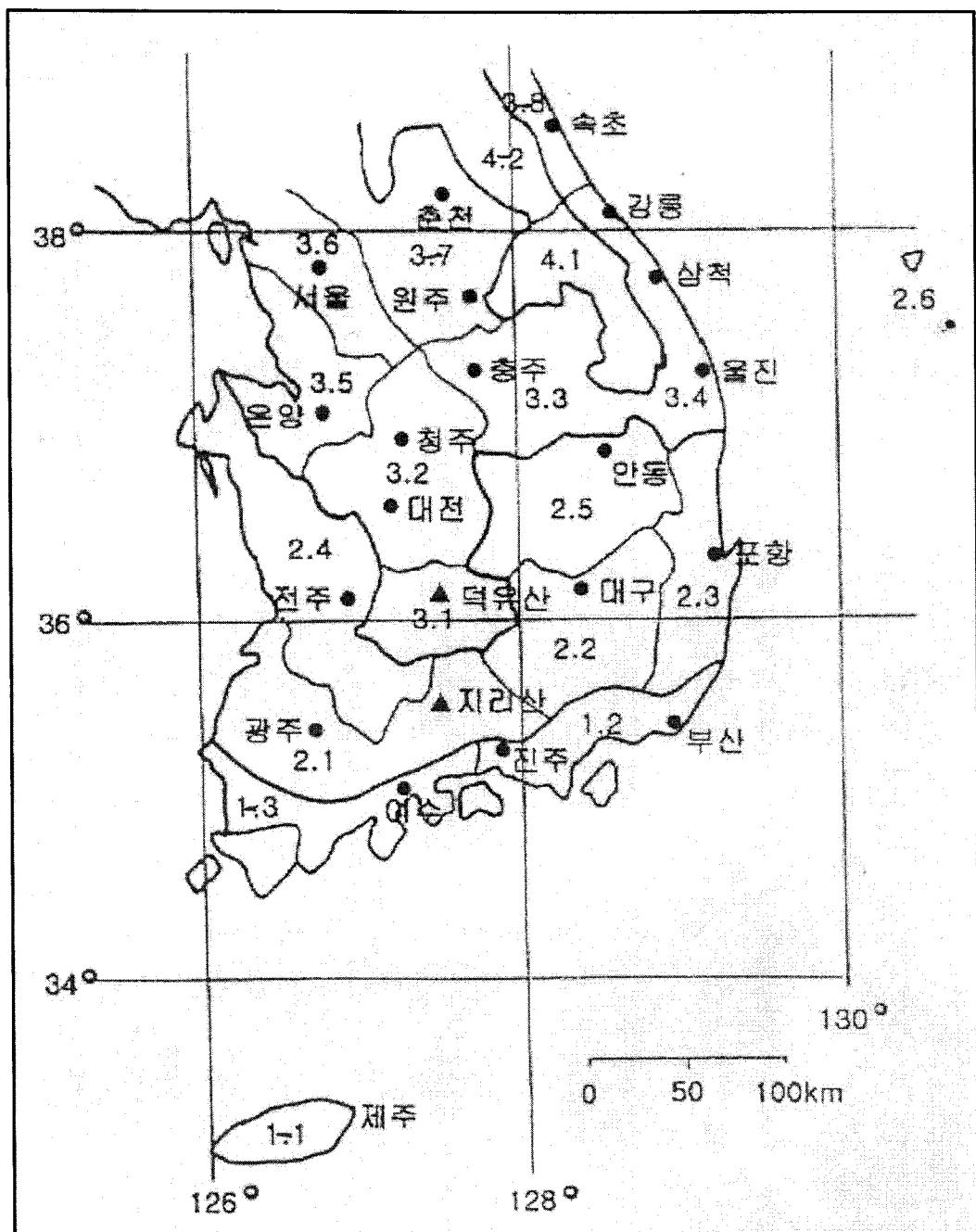
[별표 1] 삭제&lt;2006. 8. 21&gt;

## [별표 2] 종자산지구역 목록

산지 번호	산지구역	산지구역 위치
1-1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으로 제주시, 서귀포시로 형성
1-2	남부 해안	진도, 해남, 강진, 완도, 장흥(장흥, 안량, 부산면), 고흥, 여수, 남해, 사천(사천, 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제외), 통영, 고성, 거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부산, 울산(온산, 서생면)
1-3	서부 해안 및 내륙	신안, 목포, 무안,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영암, 장흥(안량, 장흥, 부산면 제외), 보성(복내, 문덕면 제외), 순천(승주, 주안, 서, 의서, 송광, 황전, 월등면 제외), 광양(다압면 제외), 하동(하동, 적량, 횡천, 악양, 청암면 제외), 사천(곤양, 용현, 정동, 축동면), 진주(이반성, 일반성면), 함안(여항, 칠원면)
2-1	서남부 해안	영광, 함평, 나주(공산, 왕곡, 세지, 다도, 반남면 제외), 화순, 광주, 장성, 담양, 곡성, 남원, 순창, 고창, 정읍, 부안, 김제, 보성(복내, 문덕면), 순천(서, 외서, 송광, 횡전, 월등, 주암면), 광양(다압면), 구례, 하동(하동, 적량, 횡천, 악양, 청암면), 산청, 진주(일반성, 이반성면 제외),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제외)
2-2	동남부 내륙	함안(여항, 일월면 제외), 창녕, 밀양, 의령, 합천(가야, 묘산, 야로면 제외), 고령, 청도, 경산, 대구, 영천, 성주(가천, 금수면 제외)
2-3	동부 해안	양산, 울산(온산, 서생면 제외), 경주, 포항, 영덕, 영양(입암, 석보면)
2-4	서북부 해안	임실(관촌, 성수, 신평, 신덕면 제외), 전주, 완주, 군산, 익산, 논산, 서천, 부여, 보령, 청양(정산, 목면 제외), 흥성, 태안, 서산
2-5	동북부 내륙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제외), 구미, 칠곡, 군위, 의성, 청송, 안동(도산, 북후, 녹천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제외), 문경(점촌, 산양, 호계면)
2-6	울릉도	경상북도 울릉군
3-1	서남부 내륙	임실(신평, 신덕, 관촌, 성수면), 장수, 함양(백전, 안의, 서산, 서하면), 거창, 합천(가야, 묘천, 야로면), 성주(가천, 금수면), 진안, 무주, 김천(증산, 지례, 대덕, 부항면)
3-2	중서부 내륙	금산, 영동, 옥천, 상주(화남, 화서, 화북, 모서, 모동면), 대전, 청양(정산, 목면), 공주, 연기, 청주, 보은, 괴산, 진천, 음성
3-3	중북부 내륙	문경(점촌, 산양, 호계면 제외), 예천(호명, 풍양, 지보면 제외), 안동(도산, 북후, 녹천면), 영주,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제외), 충주, 제천, 단양,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제외), 정선(남, 신동, 정선읍)
3-4	동남부 해안	영양(입암, 석보면 제외), 울진,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제외), 동해,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제외)
3-5	서남부 해안	예산, 아산, 천안, 당진, 평택, 안성
3-6	서북부 해안	오산, 용인, 이천, 화성, 수원, 광주, 안산, 시흥, 의왕, 군포, 안양, 과천, 성남, 하남, 부천, 광명, 인천, 서울, 남양주, 구리, 의정부, 김포, 고양, 파주, 양주
3-7	서북부 내륙	원주, 여주, 양평,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제외), 홍천(내면 제외), 춘천, 가평(북면 제외), 동두천, 포천(일동, 이동면 제외), 화천(사내, 상서면 제외), 연천, 철원(갈말, 서, 근남면 제외)
3-8	동북부 해안	양양, 속초, 고성
4-1	태백산 지역	봉화(법전, 소천, 춘양, 석포면), 태백, 영월(상동, 수주, 북면), 정선(남, 신동, 정선읍 제외), 삼척(하장, 신기, 도계읍), 강릉(왕산면 중 송현, 대기, 고단리), 평창, 횡성(둔내, 안흥, 강림면)
4-2	북부산악 지역	홍천(내면), 인제, 화천(사내, 상서면), 양구, 가평(북면), 포천(일동, 이동면), 철원(갈말, 서, 근남면)

[별표 3]

## 종자 산지 구역도



[별표 4]

## 종자품질기준

수종	순량율 %이상	발아율 %이상	수종	순량율 %이상	발아율 %이상
가래나무	98	62	동백나무	96	63
가문비나무	78	57	두충나무	98	68
가중나무	89	63	들메나무	94	44
갈매나무	89	56	때죽나무	82	68
갈참나무	76	72	떡갈나무	74	87
개나리	85	20	리기다소나무	91	85
개물푸레나무	92	52	리기태다소나무	94	85
개박달나무	51	12	말채나무	96	42
꽝나무	97	66	모감주나무	98	72
개벗나무	98	62	무궁화	91	85
개오동나무	85	30	물掴나무	66	34
거제수나무	74	35	물오리나무	60	29
계수나무	89	38	물참나무	85	67
고로쇠나무	89	26	물푸레나무	93	47
괴불나무	93	68	박달나무	76	21
구상나무	83	27	박태기나무	92	62
굴참나무	75	57	밤나무	96	61
까마귀밥여름나무	95	54	방크스소나무	84	67
까치박달나무	96	36	백당나무	98	65
낙엽송	90	40	백합나무	86	9
낙우송	72	11	버지니아소나무	90	80
난티나무	84	19	벗나무	98	62
난티잎개암나무	88	49	벽오동나무	97	66
노간주나무	76	48	복자기나무	97	26
노린재나무	96	37	복장나무	91	41
누리장나무	96	47	분비나무	82	32
노각나무	87	41	붉가시나무	97	65
눈측백	78	44	붉나무	96	76
느릅나무	84	36	비수리	96	66
느티나무	95	61	비술나무	80	23
다릅나무	83	70	비자나무	98	61
달피나무	88	32	뾰족잎오리나무	73	25
당단풍나무	86	42	사방오리나무	61	21
독일가문비	90	80	사스레나무	75	45

수종	순량율	발아율	수종	순량율	발아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사철나무	87	17	죽제비싸리	98	78
산수유	94	54	졸참나무	73	82
산겨릅나무	89	63	좀잎산오리나무	26	23
산딸나무	96	52	종비나무	85	75
산사나무	91	32	주목	96	55
산오리나무	60	29	주엽나무	85	66
산초나무	95	60	중국굴피나무	91	46
살구나무	98	80	쥐똥나무	78	62
삼나무	89	32	쪽동백	98	58
상수리나무	89	57	찔래꽃	90	57
생강나무	95	62	찰피나무	92	16
생달나무	93	55	참싸리	89	51
서어나무	95	16	참죽나무	70	53
소나무	93	87	측백나무	86	84
수수꽃다리	63	65	충충나무	95	28
쉬나무	90	65	칡	96	48
스트로브잣나무	92	80	테다소나무	95	90
신갈나무	78	52	팥배나무	67	50
싸리	93	52	팽나무	94	73
아까시나무	90	64	편백	91	12
야광나무	82	65	푸조나무	94	60
약밤나무	99	63	풀싸리	85	31
염주나무	97	5	풍개나무	97	54
오갈피나무	95	50	피나무	91	9
오동나무	78	67	함박꽃나무	95	55
옻나무	97	38	해송	96	92
은행나무	98	66	향나무	92	29
음나무	72	11	헛개나무	95	32
이나무	98	63	호도나무	97	66
이팝나무	95	60	화백	74	31
일본목련	97	67	화살나무	84	77
잎갈나무	85	49	황벽나무	93	65
자귀나무	94	56	회양목	96	48
자작나무	78	14	회화나무	87	55
잣나무	98	64	히어리	95	39
전나무	93	25			

[별표 5]

## 양묘사업기준일람표

수증별	구분	요소	과석	염가	퇴비	(도양) 다재 가련	(일반) 유산동 생석회	살균제		살충제		전체체		일부용		포장용		밀목		발철사		물		화증량		생육기준 및 이식분수		분수	독묘 분/㎥
								gr/m <sup>2</sup>	kg/m <sup>2</sup>																				
가문비나무	1-0	30	70	15	5	3(1)	43.75(3)	5(1)	-	0.04(3)	0.6	-	3.75	-	4	2.2	-	1.2	0.33	0.7	2	25.7	800	700	700				
	2-0	20	23	15	-	-	3.75(1)	-	0.04(1)	-	-	3.75	-	-	-	-	-	-	-	-	-	-	-	-	-	700	560		
	3-0	20	23	15	-	-	3.75(1)	-	0.04(1)	-	-	3.75	-	-	-	-	-	-	-	-	-	-	-	-	-	560	450		
	3-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57			
	3-2	20	23	15	-	-	3.75(1)	-	0.04(1)	-	-	3.75	-	-	-	-	-	-	-	-	-	-	-	-	-	65			
감나무	접목	30	70	15	-	-	3.75(1)	-	0.04(1)	-	-	3.75	-	-	-	-	-	-	-	-	-	-	-	-	-	36			
	대목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30			
	파종	30	70	15	2	3(1)	43.75(3)	5(1)	-	0.04(3)	0.6	3.75	-	-	-	-	-	-	-	-	-	-	-	-	-	500			
	이식	(2.0)	-	-	-	-	-	-	-	-	-	-	-	-	-	-	-	-	-	-	-	-	-	-	-	24월/㎥			
거체수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	90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	-	-	-	-	-	-	-	-	-	-	-	72			
굴참나무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120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58			
	파종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3.75	-	-	-	-	-	-	-	-	-	-	-	-	-	72			
	이식	(2.0)	-	-	-	-	-	-	-	-	-	-	-	-	-	-	-	-	-	-	-	-	-	-	-	500			
느티나무	파종	30	70	15	2	-	3.75(1)	5(1)	-	0.04(1)	0.6	3.75	-	-	-	-	-	-	-	-	-	-	-	-	-	64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	-	-	-	-	-	-	-	-	-	-	-	64			

수종별	구분	요소	과석	살균제			살충제			전자체			세계			세계			특묘 본수	
				(도양) 다처 기린	(일반) 유산동 생식회	(도양) 오 리 스	일복용	포장용	방한용	일복용	포장용	방한용	일복용	포장용	발목	발	철사	못	파종량	
대나무	편근	6	7	-	-	5(1)	-	-	0.04(4)	-	0.3(3)	0.6	-	2.2	-	-	-	-	-	6
대나무	분잎	30	70	15	5	3(1)	2(3.75(4))	5(1)	-	0.04(1)	-	3.75	-	10	-	-	-	-	-	8
독일가문비	파종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8
2-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10	-	-	-	-	-	-	400
2-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	-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10	-	-	-	-	-	-	57
2-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10	-	-	-	-	-	-	65
2-2-2	20	23	15	-	-	3.75(1)	-	-	0.04(1)	-	-	-	-	3.4	-	-	-	-	-	11.2
풀매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20.6	90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	51
루브리침나무	파종(우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500	90
리기다소나무류	파종(우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10	-	-	-	20.8 15.6	540 200
이식	30	70	15	-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	77
풀캡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	30.4	100
풀푸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10	-	-	-	-	-	72
백갈나무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51
백자나이소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2.2	10	-	-	-	8.9	100
1-1	30	70	15	-	-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77

수종별	구분	요소	화석	염기	살균제		살충제		접목자체		세포		세포		파종량		생육기준	
					(도약) 다져 가려	(일반) 유산동 생식회	(도약) 지오 렉스	(일반) 디 트리스	전체계 비율	화학면 비율	포장용 밀도	일부용 밀도	밀도	밀도	밀도	밀도	밀도	득묘
밤나무	저점목	50	230	30	-	-	23.75(5)	-	-	0.04(5)	20	0.2	-	3.75	20kg/ 100L	-	2	-
	고점목	50	230	30	-	-	3.75(5)	-	-	0.04(5)	20	0.2	-	3.75	10kg/ 100L	-	2	-
	저점목 목(1-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12
	고점목 목(1-0)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7
봄비나무	고점목 목(1-1)	30	70	15	3	-	3.75(1)	5(1)	-	0.04(1)	-	-	-	-	-	-	-	20
	1-0	30	70	15	5	3(1)	3.75(3)	5(1)	-	0.04(3)	-	0.6	-	4	2.2	-	1.2	39
	2-0	20	23	15	-	-	3.75(1)	-	-	0.04(1)	-	-	-	3.75	-	-	-	15
	3-0	20	23	15	-	-	3.75(1)	-	-	0.04(1)	-	-	-	3.75	-	-	-	12
비파나무	3-1	30	70	15	5	-	3.75(1)	5(1)	-	0.04(1)	-	-	-	3.75	-	-	-	57
	3-2	20	23	15	-	-	3.75(1)	-	-	0.04(1)	-	-	-	3.75	-	-	-	65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3.75	-	-	-	30
	사랑오리나무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90
사스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0.6	3.75	-	2.2	10	-	120
	1-1	30	70	15	2	-	3.75(1)	5(1)	-	0.04(1)	-	-	3.75	-	-	-	51	
	산수유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0.6	3.75	-	2.2	10	-	64
	산오리나무	30	70	15	2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2.2	10	-	-	70
설구나무	첩1	50	230	30	-	-	3.75(1)	-	-	0.04(1)	-	-	-	3.75	1kg/ 100L	-	2	14
	대목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	-	-	-	-	-	20

수증별	구분	요소	파석	연가	퇴비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살충제				
						(토양) 디나체 가체	(일반) 유산동 생석회	(토양) 디프 테레스	전체체	일부용	포장용	방한용	일부용	포장용	발목	발	철사	못	마종류	생입기준 및 이식분수	득 묘 본 수	
삼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1)	5(1)	-	0.04(11)	0.6	3.75	-	2.2	10	1.2	0.33	0.7	2	23.3	500	400
이식	30	70	15	2	-	3.75(10)	5(1)	-	0.04(10)	-	3.75	-	10	-	-	-	-	-	-	64	46	
상수리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	3.75	-	10	-	-	-	-	-	479.2	50	40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10	-	-	-	-	-	-	50	40	
수원포플러	C1/1	30	138	30	25	소석회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16	8	
스트로브체나무	파종	30	70	15	5	3(1)	3.75(3)	5(1)	-	0.04(3)	0.6	-	4	2.2	-	1.2	0.33	0.7	2	20.0	480	380
1-1	파종	30	70	15	2	-	3.75(1)	5(1)	-	0.04(1)	-	-	-	-	-	-	-	-	-	120	92	
1-2	파종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	-	-	-	90	72
신갈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3)	-	3.75	-	10	-	-	-	-	-	406.4	64	51
아까시	파종	30	70	15	120	목회	3(1)	-	5(1)	0.5(1)	-	3.75	-	10	-	-	-	-	-	21.6	80	64
양황칠나무	C1/1	30	138	30	25	소석회	-	1.2(1)	5(1)	0.16(4)	0.04(1)	-	3.75	-	10	-	-	-	-	-	12	8
오동나무	분조	30	70	17	17	목회	-	3.75(2)	5(1)	0.04(2)	-	3.75	-	10	-	-	-	-	-	6	4	
	설생	30	70	17	17	목회	3(1)	3.75(12)	5(1)	-	0.04(12)	-	3.75	-	10	-	-	-	-	0.46	9	6
옻나무(옻나무)	파종	30	70	15	2	3(1)	23.75(1)	5(1)	-	0.04(1)	0.6	3.75	-	2.2	10	-	-	-	-	*129.6	34	54
유동나무	유종	30	70	15	1	3(1)	-	5(1)	-	-	3.75	-	-	10	-	-	-	-	-	*146.2	32	25
은행나무	거치(5년)	-	30	70	15	2	3(1)	3.75(4)	5(1)	-	0.04(4)	-	-	-	-	1.2	0.33	0.7	2	122.8	100	70
		-	-	-	-	-	3.75(2)	-	-	0.04(2)	-	3.75	-	-	10	-	-	-	-	20	20	

수종별	구분	요소	화석	염가	퇴비	산기체		생기체		생기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폐기물	
						(토양)	(일반)	(토양)	(일반)	전화체	일복용	포장용	방한용	포장용	일복용	포장용	
흙나무		gr/m <sup>3</sup>	gr/m <sup>3</sup>	kg/m <sup>3</sup>	kg/m <sup>3</sup>	cc/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kg/㎥	kg/㎥	m/㎥	m/㎥	m/㎥	m/㎥	m/㎥	
이ティー포목류	C1/1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3.75	-	2.2	10	-	
자작나무	C1/2	20	46	10	25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잣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4)	0.04(1)	3.75	-	-	10	-	
	이식	30	70	15	2	-	3.75(1)	5(1)	-	0.04(3)	0.6	3.75	-	2.2	10	-	
	파종	30	70	15	5	3(1)	3.75(3)	5(1)	-	0.04(1)	0.6	3.75	-	-	10	-	
	2-1	30	70	15	2	-	3.75(1)	5(1)	-	0.04(1)	-	3.75	-	4	2.2	-	
	②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③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10	-	-
		2-2-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2-0	20	23	15	-	-	3.75(3)	5(1)	-	0.04(3)	0.6	-	4	2.2	-	3.4
		3-0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2-1	30	70	15	5	-	3.75(1)	5(1)	-	0.04(1)	-	3.75	-	-	10	-
		2-2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2-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2-3-3	20	23	15	-	-	3.75(1)	-	-	0.04(1)	-	3.75	-	-	10	-
줄잎산오리나무	파종	10	70	15	1	3(1)	3.75(12)	5(1)	0.5(1)	0.04(12)	0.6	3.75	-	-	3.4	-	-
죽나무(죽나무)	파종	-	-	-	-	-	-	-	-	-	-	-	-	-	2.2	10	-
메타소나무	1-0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3.75	-	-	-	-	-
															30.0	200	160

수종별	구분	요소	화석	염기	퇴비	(토양) 다재 가변	(일반) 유산동 생식회	살균제		살충제		전체체		질		세기		화증량		철사		물		화증량		생업기준 및 이석본수		특묘 본수	
								gr/m <sup>3</sup>	gr/m <sup>3</sup>	kg/m <sup>3</sup>	kg/m <sup>3</sup>	cc/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kg/m <sup>3</sup>	kg/m <sup>3</sup>	kg/m <sup>3</sup>	m/m <sup>3</sup>	m/m <sup>3</sup>	m/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m/g <sup>3</sup>	m/g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gr/m <sup>3</sup>
폐	폐	파종 용기 (2-0)	30	70	15	2	3(1)	3.75(5)	5(1)	-	0.04(5)	0.6	0.04(5)	0.6	3.75	-	2.2	10	1.2	0.33	0.7	2	35.8 14회/월	35.8 14회/월	1.5본/월	550 1본/월	450 1본/월		
	이석		30	70	15	3	-	3.75(4)	5(1)	-	0.04(4)	-	0.04(4)	-	3.75	-	10	-	-	-	-	-	-	-	-	-	64	45	
	1-1-1	30	70	15	3	-	3.75(2)	5(1)	-	0.04(2)	-	0.04(2)	-	3.75	-	10	-	-	-	-	-	-	-	-	-	-	49	45	
	1-2-2	20	23	15	-	-	3.75(1)	-	-	0.04(1)	-	0.04(1)	-	-	-	-	-	3.4	-	-	-	-	-	-	-	-	16	12.8	
폐	나무	파종	30	70	15	2	3(1)	3.75(1)	5(1)	-	0.04(1)	0.6	0.04(1)	0.6	3.75	-	2.2	10	-	-	-	-	-	-	-	-	191.0	64	51
폐	송	파종	30	70	15	2	3(1)	3.75(3)	5(1)	-	0.04(3)	0.6	0.04(3)	0.6	3.75	-	2.2	10	-	-	-	-	-	-	-	-	32.1	600	540
폐	해	이석	30	70	15	2	-	3.75(1)	5(1)	-	0.04(1)	-	0.04(1)	-	3.75	-	-	10	-	-	-	-	-	-	-	-	90	72	8
	현사시나무	C1/1	30	138	30	-	소석회 25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	-	-	-	-	-	16	8	5
	현사시나무	C1/2	10	46	10	-	1.2(1)	5(1)	0.16(4)	0.04(1)	-	3.75	-	-	10	-	-	-	-	-	-	-	-	-	-	-	6	5	
호	나무	(가래나무)	30	70	15	6	3(1)	3.75(4)	5(1)	-	0.04(4)	-	0.04(4)	-	3.75	-	-	10	-	-	-	-	-	-	-	-	36	29	29
	나무	파종	30	230	-	-	3(1)	3.75(4)	-	-	0.04(4)	-	0.04(4)	-	3.75	-	-	10	0.4	-	2	2	-	-	-	-	16	4	4
	나무	접목	50	50	15	2	3(1)	23.75(5)	5(1)	-	0.04(5)	0.6	0.04(5)	0.6	3.75	-	2.2	10	1.2	0.33	0.7	2	23.8	600	480	600	480		
화	백	이석	30	70	15	3	-	3.75(4)	5(1)	-	0.04(4)	-	0.04(4)	-	3.75	-	-	10	-	-	-	-	-	-	-	-	64	45	45
	나무	노지파종 (1-0)	30	70	15	2	3	-	5	-	0.6	0.6	0.6	0.6	0.6	-	2.2	2.2	-	-	-	-	-	-	-	100	50	35	
	나무	온실파종 2개월 후	30	70	15	2	3	-	5	-	0.6	0.6	0.6	0.6	0.6	-	2.2	2.2	-	-	-	-	-	-	-	100	50	35	

[별표 6]

양묘 사업 일정 계획표

수종별	구분	청운	청자	조상	파종	이식	접설목	시비	1일	인	약제	살포	제초	솎음	결순	파기	공	1일	총			일부	일부	체계			
																			m <sup>3</sup> /1인	m <sup>3</sup>	m <sup>3</sup>	m <sup>3</sup> /30일	m <sup>3</sup>	m <sup>3</sup>			
가문비나무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폐종	12,080	300	50	30	-	-	300	-	-	10,000	600	1,400	130	-	-	-	-	210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거치	-	-	-	-	-	-	5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대목	12,080	500	80	100	-	-	300	-	100	-	400	20,000	600	1,400	-	-	-	-	-	-	-	-	-	-	-	
	접목	200	-	-	-	-	접400분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소나무	폐종	12,080	500	50	40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5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파종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소나무수	폐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거제	12,080	500	40	30	-	-	300	-	6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굴참나무송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300	80	-	15	-	500	-	10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느티나무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대나무나무나무나무나무	폐종	12,080	400	100	-	-	-	4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100	-	-	-	4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분蘖	12,080	500	8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기종	12,080	500	80	-	15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분蘖	12,080	500	80	-	15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루브리침나무	폐종	12,080	500	80	-	15	-	3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리기단소나무류	12,080	500	50	-	-	-	300	-	6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대에다)	12,080	500	40	-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물푸레나무	12,080	500	80	-	15	-	500	-	10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락달나무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수종별	구분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달목		시비		약제 살포		제초		숙음		총		임		일		1		1		임		총		감독		관수		폐수로 수리		일복 시설		일복 체거	
		m <sup>2</sup> /3인일 [설정2,500 설충2,500]	m <sup>2</sup> /1인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3인일 [설정2,500 설충2,500]	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3인일 [설정2,500 설충2,500]	m <sup>2</sup>																																		
밤나무	체접재목	12,080	500	80	50	-	-	-	-	300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	-												
	체접재목 고접재목 (-0)	12,080	-	-	-	-	-	-	-	300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													
	고접 페종	12,080	500	80	-	-	-	30	-	500	"	300	"	100	-	4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													
벼지나이소나무	이식 페종	12,080	500	50	-	-	-	40	-	300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													
	파종 페종	12,080	500	40	-	-	-	15	-	500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이식 페종	12,080	500	80	-	-	-	100	-	300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비화나무	사스레나무	12,080	500	40	30	-	-	30	-	300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이식 대목	12,080	500	80	-	-	-	15	-	300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대목 접목	12,080	500	80	50	-	-	50	-	300	"	300	"	60	60	-	4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살구나무	상나무	12,080	300	40	30	-	-	30	-	300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	-	-	-	-	-	-	-	-	-													
	이식 페종	12,080	300	80	-	-	-	15	-	300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이식 페종	12,080	300	80	50	-	-	15	-	300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	-	-	-	-	-	-	-	-	-													
상수리나무	수원포풀리	C1/2	12,080	500	100	-	-	900본	-	-	-	-	-	600	600	-	200	30,000	600	1,400	-	-	-	-	-	-	-	-	-	-	-	-	-												
	스토로보꽃나무	페종	12,080	500	50	30	-	-	-	300	"	300	"	15	-	-	500	100	10,000	600	1,400	-	-	-	-	-	-	-	-	-	-	-	-												
	이식 거치	12,080	500	80	-	-	-	15	-	500	"	500	"	100	-	-	-	-	10,000	600	1,400	-	-	-	-	-	-	-	-	-	-	-	-												
신갈나무	아까	12,080	500	80	50	-	-	50	-	300	"	300	"	60	60	-	-	-	20,000	600	1,400	-	-	-	-	-	-	-	-	-	-	-	-												
	양형철나무	C1/2	12,080	500	100	-	-	900본	-	-	-	-	-	600	600	-	200	30,000	600	1,400	-	-	-	-	-	-	-	-	-	-	-	-													

수종별	구분	경운	정지	조상	파종	이식	접습목	시비	약제	살포	월			공			청			일별 제거 m <sup>3</sup>
											m <sup>3</sup>									
오동나무	분군, 실생	12,080	500	80	-	50	-	300	-	200	-	-	-	-	-	-	-	-	-	
오리나무류	파종	12,080	3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나	파종	12,080	500	50	50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	
유동나무	파종	12,080	500	80	50	-	-	300	-	60	-	-	20,000	600	1,400	-	-	-	-	
나	파종	12,080	500	8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이태리포도나무	C1/2	12,080	500	100	-	-	900본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	-	
자작나무	파종	C1/2	12,080	500	100	-	-	400*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	
잣나무	이식	12,080	500	40	30	-	-	300	-	60	20	-	20,000	600	1,400	-	-	-	-	
나	파종	12,080	500	80	-	15	-	300	-	100	-	-	20,000	600	1,400	-	-	-	-	
나	이식	12,080	500	50	30	-	15	-	300	-	60	40	-	10,000	600	1,400	130	210	-	
나	거치	12,080	500	80	-	-	-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	
나	파종	12,080	300	50	-	15	-	-	300	-	60	40	-	10,000	600	1,400	130	210	-	
나	이식	12,080	500	80	-	-	-	-	500	-	100	-	-	10,000	600	1,400	-	-	-	
나	거치	12,080	-	-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	
나	파종	12,080	500	80	-	-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나	이식	12,080	300	40	-	15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130	210	-	
나	거치	12,080	300	8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	
나	파종	12,080	500	80	-	-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나	이식	12,080	300	40	-	15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나	거치	12,080	300	8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	
나	파종	12,080	500	80	-	-	-	-	300	-	60	30	-	20,000	600	1,400	-	-	-	
나	이식	12,080	500	40	-	15	-	-	300	-	60	30	-	10,000	600	1,400	-	-	-	
나	거치	12,080	500	80	-	-	-	-	500	-	100	-	-	20,000	600	1,400	-	-	-	
나	파종	12,080	500	100	-	-	900*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	-	
나	이식	C1/2	12,080	500	100	-	-	400*	600	200	-	500	30,000	600	1,400	-	-	-	-	
현사	1	C1/2	12,080	500	100	-	-	-	-	-	-	-	-	-	-	-	-	-	-	

수종별	구분	1인										공장				일부 제거		
		경운	정자	조상	파종	이식	접습목	이비	약제	살포	체조	숙음	결습	감독	판수	배수로 수리	일부 시설	
호두나무(7대)	파종	12,080	500	80	40	-	-	300	m <sup>2</sup> /33년1월 [설정2,200 설정2,500]	60	-	-	20,000	600	1,400	-	-	
화	파종	12,080	300	40	30	-	15	-	m <sup>2</sup> /33년1월 [설정2,500 설정2,500]	60	30	-	10,000	600	1,400	130	210	
	이식	12,080	300	80	-	40	-	-	"	100	-	-	20,000	600	1,400	-	-	
	파종	12,080	300	40	40	-	15	-	300	2,500	60	30	-	10,000	600	1,400	-	-
	이식	12,080	300	80	-	40	-	-	500	2,500	100	-	500	20,000	600	1,400	-	-
	백합나무																	

수종별	구분	1인 1일 공정			수			수			수			수			결손 판지
		굴취	선묘 접수기식	포장	시비	토양설균	토양설충	일반설균	일반설충	체조	체속	판수	배수로 판지	체조	체속	판수	
기문비나무 (독일가문비, 기문비나무, 분비나무)	파종	-	-	2	2	1	1	3	-	7	1	7	2	2	-	-	
	이식	30	5,000 (2,000kg)	10	2	2	-	1	1	-	6	-	4	2	2	-	
	거치	20	3,500	10	-	2	-	-	1	-	6	-	4	2	2	-	
감나무	목재	-	-	2	2	1	-	1	1	-	5	-	7	2	2	-	
	목재	30	1,000	10	-	2	1	1	1	-	6	-	2	2	2	-	
소나무	목재	20	7,000	15	2	2	1	1	3	-	7	3	-	2	2	-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3	4	2	2	-	
거제	목재	20	7,000	15	2	2	1	1	1	-	6	-	4	2	2	-	
굴참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	7	2	2	-	
나	목재	20	4,000	10	2	2	1	1	1	-	6	-	7	2	2	-	
노티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	4	2	2	-	
대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	2	2	2	-	
대나무	목재	400	-	5,000본	2	4	-	-	-	-	6	-	2	2	2	-	
대나무	목재	100	1,000	10	2	4	-	1	1	-	5	-	4	2	2	-	
대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3	4	2	2	-	
루브라참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	4	2	2	-	
리기다소나무류	목재	10	7,000	15	2	1	1	1	1	3	-	7	3	4(97)	2	-	
(태다)	목재	30	4,000	10	2	2	-	1	1	-	6	-	2	2	2	-	
풀풀데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2	4	2	2	-	
박달나무	목재	30	4,000	10	2	2	1	1	1	-	6	3	4	2	2	-	

수종별	구분	1년 1월 공정			시약			제조			판수			배수로 회	결승 회
		줄기	선단부 결속기지	포장	경운	시비	도양설균	일반설균	일반설충	제조설충	제조	숙음	제조	숙음	
발나무	제첨대목 제첨목 고철목 1-0	-	-	10 2,000	-	2 2	2 2	1 1	2 2						
버자나이소나무	고찰종 고찰종 1-1	30 30	300 7,000	10 2	- 2	2 1	- 1	1 1	7 7						
비파나무	이파종 파대목 파목 파종 이식	30 30 30 30	4,000 5,000 4,000 300	10 10 10 15	2 2 2 2	2 1 2 1	1 1 1 1	4 4 4 4							
비파나무	사스레나무 나무	-	-	-	-	2	2	1	1	1	1	1	1	1	4 4
삼나무	파종 이식	30 30	300 7,000	10 15	2 2	2 2	1 1	7 7							
상수리나무	파종 이식	20 30	4,000 4,000	10 10	2 2	2 2	1 1	2 2							
수원포플러	C1/1 스토로브很差나무	250본	800	800	2	2	1	1	1	1	1	1	1	1	7 4
신갈나무	이파종 파종 C1/1	-	-	5,000 (2,0포함)	10	2	2	-	-	1	1	1	1	1	4 2
아까양황칠나무	거치 파종 C1/1	20 30 250본	3,500 4,000 800	10 10 800	2 2 2	2 1 1	1 1 1	5 2 5							

수종별	구분	1인 1일 공정		시설기지		설비		원자재			제조			판수			배수료		결손		
		굴체	m <sup>3</sup>	선박	전속기지	시비	기지	토양설정	토양설정	일반설정	일반설정	제초	축음	제초	축음	판수	기지	기지	판수	기지	판수
오동나무	분근, 실장	50m <sup>3</sup>	1,000	10	2	2	1	2	-	6	-	6	2	2	2	-	-	-	-	-	-
오리나무류	파종	30	4,000	10	2	2	1	12	1	7	3	7	2	2	2	2	2	2	2	2	2
옹나무	파종	30	2,000	10	2	2	1	1	1	6	-	4	2	2	2	2	2	2	2	2	2
옹나무	파종	50	-	10	2	2	1	1	1	6	3	4	2	2	2	2	2	2	2	2	2
옹나무	파종	30	4,000	10	2	2	1	1	1	4	2	2	2	2	2	2	2	2	2	2	2
옹나무	파종	800	800본	2	2	1	1	1	1	4	2	2	2	2	2	2	2	2	2	2	2
이태리포플리	C1/1	250본	-	-	-	-	-	-	-	-	-	-	-	-	-	-	-	-	-	-	-
자작나무	C1/2	200*	600	600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2
자작나무	C1/2	30	4,000	10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2
자작나무	C1/2	30	4,000	10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2
잣나무	C1/2	-	-	-	-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잣나무	C1/2	30	5,000(24포함)	10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2
전나무	가치	20	3,500	10	-	2	2	-	-	-	-	-	-	-	-	-	-	-	-	-	-
전나무	가치	30	5,000(24포함)	10	-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죽체비(체리), 침체비	체	30	3,500	10	-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20	7,000	15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20	3,5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20	7,000	15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2,000*	800	800	2	2	-	-	-	-	-	-	-	-	-	-	-	-	-	-
체	체	30	2,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20	7,000	15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체	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현사나무	나무	250*	800	800	2	2	-	-	-	-	-	-	-	-	-	-	-	-	-	-	-
현사나무(7채)	나무	30	2,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현사나무(7채)	나무	20	7,000	15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현사나무(7채)	나무	30	4,000	10	2	2	2	1	1	1	4	4	6	3	2	2	2	2	2	2	2

수 종 별 구분	구별	1 인 1 일 공정		사 업		수 허		결손 액
		설비 설비가격	인건비	토양살균 화학	일반살균 화학	제초 화학	숙음 화학	
비합니무	이식	㎡ 20	4,000 10	2 1	- 1	- -	6 -	2 -

수 종 별 구분	구분	유묘상자		파트모스 포/100상자 4	펠라이트 포/100상자 20	바류클라이트 포/100상자 20	풀밥 포/100상자 20	파목용 배달 m/m <sup>2</sup> 1.5
		상자/m <sup>2</sup>	㎡					
비합니무	온실파종	6	113ℓ	※1포 : 100ℓ	※1포 : 20ℓ			

[별표 7]

## 산림용 묘목 규격표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가래나무	1-0	cm이상	mm이상	cm이상	
가문비나무	3-1	15	8	20	
	3-2	22	7	23	
가중나무	1-0	28	7		
	1-1	21	3		
갈참나무	1-1	42	8	25	
감나무	접목1	30	6		
소나무	1-1 용기묘(2-0)	45	8	20	
거제수나무	1-0	16	5	18	
	1-1	25	3		
고로쇠나무	1-0	22	2		
	1-1	40	5	25	
구상나무	1-0	32	4		
	1-1	62	5		
	1-0	4	1		
	2-0	6	2		
	2-2	18	5		
굴참나무	2-3	22	7		
	1-0	25	4	23	
	1-1	38	6	25	
낙엽송	1-0	25	3	18	
	1-1	35	6	20	
	용기묘(1-0)	20	3		
	용기묘(2-0)	46	6		
난티나무	1-0	20	2		
	1-1	94	6		
노각나무	1-1	30	4		
	1-1-1	58	9		
느릅나무	1-0	23	3		
		120	8		
느티나무	1-0	42	3	25	
	1-1	90	7	27	
다릅나무	1-0	16	3		
	1-1	31	4		
단풍나무	1-0	11	2		
당단풍	1-0	11	2		

플라스틱 24구 용기  
(320ml/구,  
Φ6.4\*13cm/구)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독일가문비	2-2	cm이상	mm이상	cm이상	
	2-3	35	8	18	
	2-2-2	55	10	20	
		60~79	10	24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 이상
		80이상	10	30	
두릅나무	1-1	50	7		
두충나무	1-0	26	3		
들매나무	1-1	51	5		
	1-0	12	2		
	1-1	30	5	20	
	1-1-1	40	7		
루브라참나무	1-0	25	5	20	
	1-1	30	6	30	
리기다소나무	1-0	15	4	15	
리기테다소나무	1-1	25	6	18	
	1-0	15	3	15	
	1-1	30	5	20	
	1-0	22	3		
마가목	1-1	35	6		
말채나무	1-0	44	4		
	1-1	58	5		
물槛나무	1-0	18	5		
물오리나무	1-0	18	5		
물푸레나무	1-0	25	6	20	
	1-1	41	7	26	
	1-0	58	4		
	1-1	70	7		
밤나무	대목1-0	70	8	20	
	대목1-1	120	8 (지상30cm)	25	○ 간장 : 접합부로 부터 의 길이
	저접1	50	8	20	○ 근원경 : 접수의 직경
	고접1	50	10	25	○ 접합부의 유합이 완 전한 것
	유접1	45	6	15	○ 묘간부가 절단되지 않은 것
백합나무	1-0		8		
	1-1		9		
버진니아소나무	1-0	8	1		
	1-1	25	4	20	
복자기	1-0	19	3		
	1-1	24	4		
분비나무	3-1	18	5	18	
	3-2	22	7	20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사방오리나무	1-0	18	5		
사스레나무	1-0	11	2		
	1-1	35	5	25	
산딸나무	1-0	35	4		
	1-1	44	5		
산수유	1-1	58	6		
산벗나무	1-0	28	3		
살구나무	접1	50	6	25	
삼나무	1-1	27	5	18	
	1-1-1	35	7	20	
상수리나무	1-0	28	5	23	
	1-1	39	7		
	용기(1-0)	28	3		
세로티나벗나무	1-0	26	2		
수원포플러	C1/1	180	11	20	
스트로브잣나무	1-0	4	1		
	1-1	7	2		
	1-2	23	6	20	
	2-0	9	2	17	
	2-1	33	7		
신갈나무	1-0	26	3	23	
	1-1	37	5		
아까시나무	1-0	35	5		근류균괴가 부착되어야 함
	1-1	80	7	20	
양황철나무	C1/1	210	12	20	
오동나무	분근1	70	20	25	
	실생1	50	15	20	
	치상묘	-	6	20	
오리나무	1-0	18	5	18	오리나무류는 근류균괴가 부착되어야 함
옻나무	1-0	18	5		
	1-1	50	7		
은행나무	1-0	10	4		
	1-1	18	5		
	2-0	30	7	15	
음나무	1-0	20	3	20	
	1-1	21	6		
이태리포플러	C1/1	220	10	20	근원경 50cm의 직경
	C1/2	300	18	30	
자작나무	1-0	40	5	25	
	1-1	67	5	25	

수종	묘령	간장	근원경	근장	비고
잣나무	2-0	cm이상	mm이상	cm이상	
	3-0	13	3	15	
	2-1	18	5	15	
	2-2	16	4	15	
	2-3	22	6	18	
	2-2-3	32	8	20	
전나무	60~79	10		28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80이상	10		34	
	1-0	4.0	1		
	2-0	6.0	2		
	2-1	9.0	4		
	2-2	18	5	18	
졸참나무 좀잎산오리나무 주목	2-3	22	7	20	
	2-2-3	60~79	11	32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80이상	11		38	
	1-1	35	6		
	1-0	18	5		
	1-2	10	2		
쪽제비싸리, 참싸리 쪽동백	2-1	16	3		
	3-2	37	6		
	1-0	30	4	15	
	1-0	55	5		
	1-0	15	3		
	1-1	42	7		
찰엽수 총총나무	1-0	22	7		
	1-0	45	5		
	1-1	56	5		
	1-0	20	4	15	
	1-1	27	6		
	1-1-1	27	4	18	
편백	1-2-2	35	7	20	
	70~89	10		28	근장은 수관폭임 분뜨기 18cm×18cm이상 플라스틱 28구 용기 (300㎖/구, ø6.4*13cm/구)
	90이상	10		34	
	용기묘(2-0)	33	4		
	1-0	25	7	25	
	1-1	40	10		
해송 헛개나무	1-1	16	6	18	
	1-0	50	5		
	C1/1	150	10	20	
	C1/2	180	15	25	
	1-0	15	8	20	
	접1	15	8	20	
화백	1-0	6	1		
	1-1	27	4	18	
	1-0	21	4		
	1-1	82	6		
	C1/1	210	12		

[별표 8]

## 곤포당 및 속당 묘목 본수표

수 종	묘 령	곤 포 당		속당본수	비고
		본 수	속 수		
감 나 무	접목1년	200	10	20	
소 나 무	1-1	1,000	50	20	
거 제 수	1-0	1,500	75	20	
낙 엽 송	1-1	500	25	20	
느 티 나 무	1-0 1-1	1,500 1,000	75 50	20 20	
대 추 나 무	접목 · 분蘖묘	100	10	10	
독일가문비, 가문비나무	2-2	500	25	20	
들 메 나 무	1-0	1,000	50	20	
루브라참나무	1-0	1,000	50	20	
리기다소나무	1-1 1-0(성)	1,000 2,000	50 100	20 20	
리기테다소나무	1-1 1-0(성)	800 1,500	40 75	20 20	
풀 푸 레 나 무	1-0 1-1	1,000 500	50 25	20 20	
박 달 나 무	1-0	1,500	75	20	
밤 나 무	접목1년	100	10	20	
버지니아소나무	1-1	1,000	50	20	
분 비 나 무	2-3	400	20	20	
사스레 나무	1-0	1,500	75	20	
살 구 나 무	접목1년 1-0(대목)	200 1,000	10 50	20 20	
삼 나 무	1-1	1,000	50	20	
상수리, 굴참, 신갈	1-0 1-1	1,000 500	50 25	20 20	

수종	묘령	곤포당		속당본수	비고
		본수	속수		
스트로브잣나무	2-1	1,000	50	20	
	2-2	500	25	20	
아까시	1-0	1,000	50	20	
음나무	1-0	1,500	75	20	
오동나무	분근, 실생 (1년)	50	5	10	
오리나무류	1-0	2,000	100	20	
옻나무	1-0	1,000	50	20	
자작나무	1-0	1,000	50	20	
	1-1	500	50	20	
잣나무	2-0	2,000	100	20	
	2-1	1,000	50	20	
	2-2	500	25	20	
전나무	2-2	500	25	20	
	2-3	400	20	20	
쪽제비나무, 참싸리	1-0	2,000	100	20	
테다소나무	1-1	800	40	20	
	1-0(성)	1,500	75	20	
편백	1-1	1,000	50	20	
포플러류	C1/1	80	8	10	
	C1/2	50	5	10	
펴나무	1-0	1,500	75	20	
호두나무	1-0	500	25	20	
	접목묘	300	15	20	
해송	1-1	1,000	50	20	
화백	1-1	1,000	50	20	
백합나무	1-0	300	15	20	
	1-1	100	10	10	

[별지 제1호 서식]

채종림·수형목 채종임분					지 선 해	정 정 제	현황보고서		
구분	지정 번호	지정 년월일	지정 기간	소유별	지정·선정·해제 내용				
					구역 면적	수종	소재지	본수	수령
					ha			본	년

(190mm×268mm)

[별지 제2호 서식]

## 채종원·채수포조성 실적보고

구분	조성 년월일	수종	소재지	조성 실적		종자(접·삽수) 채취가능 년도
				면적	본수	
				ha	본	

(190mm×268mm)

[별지 제3호 서식]

채종림 등 종자 결실 예찰조사보고

구 분	산지번호	조 사 개 소	수 종	풍 · 흥	채취가능량
					kg

(190mm×268mm)

[별지 제4호 서식]

### 산림용종자채취결과보고

구분	산지번호	산지구역	채취장소	수종	계획량	채취량	채취기간
					kg	kg	

(190mm×268mm)

[별지 제5호 서식]

### 종자산지내역

1. 종자생산원	채종원 · 채종림 · 채종임분		
2. 채취장소	(산지번호 : — )		
3. 수종명			
4. 수령 (채종원조성년도)			
5. 종자채취일자			
6. 수량			
7. 생산자	성명		상호 또는 법인명
	주소		
	종묘생산업 등록번호		
	사업자 증정번호		
8. 기타			

20 년 월 일

00 지방산림청장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인)

00 시·도지사 (인)  
00 시장·군수 (인)

(190mm×268mm)

[별지 제6호 서식(1)]

산림용종자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 종자공급원	⑤ 산지번호	⑥ 산지구역	⑦ 수종	⑧ 채취장소	⑨ 검사목적
	kg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00 산림환경연구소장 귀하

구비서류 : 종자산지내역 1부(별지 제5호 서식)	수수료 원
-----------------------------	----------

(190mm×268mm)

[별지 제6호 서식(2)]

### 산림용종자검사결과통보서

신청인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④종자 공급원	⑤산지 번호	⑥산지 구역	⑦ 수종	⑧ 품질기준(%)		⑨검사결과(%)		⑩ 판정 (합격.불합격)
				순량율	발아율	순량율	발아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종자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20

검사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인)  
                00 산림환경연구소장 (인)

000 귀하

붙임서류 : 종자품질표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190mm×268mm)

[별지 제7호 서식(1)]

(1. 표면)

## 양묘시업상황보고

## 1. 총괄

(단위 : ha, 천본)

① 구분	② 주체별	③ 생산 자수 (명)	④ 포지 보유 면적	⑤ 시업 면적	생산계획분수				⑩ 기타	
					⑥ 합계	대행 생산지정				
						⑦ 계	⑧ 중앙	⑨ 도·지방청 자체계획		
성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연구소									
	지방청									
유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연구소									
	지방청									

[별지 제7호 서식(2)]

(2. 이) 면)

## 2. 성·유묘별, 주체별 :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수종	③ 묘령	④ 종자 공급원	⑤ 종자 산지 번호	시업량		생산계획본수				⑫ 기타
					⑥ 종자 (kg)	⑦ 묘목	⑧ 합계	⑨ 계	⑩ 중앙 계획	⑪ 도·지방청 자체계획	
계											
성묘											
계											
유묘											

[별지 제8호 서식(1)]

(1. 표면)

## 양묘실태조사보고

## 1. 총괄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주체별	생산계획				생산실적				⑤ 증감 (④-③)	
		합계	생산지정			비 지 정	합계	생산지정			
			③ 계	중앙	도· 지방 청			④ 계	중앙	도· 지방 청	
성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 연구소										
	지방청										
유묘	계										
	양묘업자 (개인)										
	양묘업자 (법인)										
	산림조합										
	환경 연구소										
	지방청										

[별지 제8호 서식(2)]

(2. 이 면)

## 양묘실태조사보고

(단위 : 천본)

① 구분	② 수종	③ 묘령	④ 종자 공급 원	시업량		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증감 (⑥)-(⑤)	
				종자 (kg)	본수	⑤ 지정	비지 정	지정					
								합계	⑥ 계	중앙	자체		
계													
경제수	소계												
바이오	소계												
특용수	소계												
유실수	소계												
사방수	소계												

(190mm×268mm)

[별지 제9호 서식]

### 산림용 묘목 검사 통보서

①수종별	②묘령	③수요처 (조림지)	④수량	⑤검사 예정일시
			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와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 산림용 묘목 검사 예정일을 통보하오니 수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1. 표 면)

산림용묘목검사야장				판정내용	
				합격 여부	최종합격묘 본 수
① 모집단 번 호		② 검 사 일 자		③ 합·불	천본
④ 수 종		⑤ 묘 령		⑥ 수량	속 본
⑦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⑧ 입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⑨ 검사자 성명		소 속	~		
검 사 내 역	포 장 전 검 사	⑩ 실제총속수			
	포 장 전 검 사	⑪ 시료기준(속) 본 수			
	포 장 전 검 사	⑫ 실제본수	본	⑬ 수량율 $\frac{⑫}{⑪} \times 100$	%
	포 장 전 검 사	⑭ 실체본수중 합격본수	본	⑮ 품질율 $\frac{⑯}{⑭} \times 100$	%
포 장 검 사	⑯ 실제총곤포수				곤포
	⑰ 최종합격본수				본 (⑯×곤포당기준본수×⑬×⑮)

(190mm×268mm)

[별지 제10호 서식]

(2. 이 면)

포장전검사									포장검사	해포검사		
속수검사		표본검사							검사원입회 포장하였을 경우	검사원 무입회 포장하였을 경우		
⑯ 1속 열 당수	⑯ 열 수	수량검사		품질검사					㉓ 입회 연월일	㉔ 입회 자 (검사 원)	㉕ 시료 (곤 포) 번호	㉖ 실제 본수
		㉐ 시료 (속) 번호	㉑ 실제 본수	㉒ 불합격묘 내용								
번호	간장	근원경	근장	기타								
계											㉗ 속수비율 (실제곤포당 속수곤포당 기준속수)	

[별지 제11호 서식]

## 산림용 묘목 재선별 통지서

생 산 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재 선 별 통 지	④ 모집단번호		⑤ 재검사 요청기한	20 . . .
	⑥ 수종 및 묘령		⑦ 수 량	본
				본
⑧ 사유				

위와 같이 묘목 재선별 통보하오니 재선별 후 위 기한까지 검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 . . .

산림용 묘목검사원 소속 :

직·성명 : (인)

위 재검사 요청 기한까지 재검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190mm×268mm)